

2025. 11.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승선 의원)

의안 번호	2025-173
----------	----------

발의연월일 : 2025. 11.

발의자 : 최승선, 주상현,
오승경, 황배연 의원 (4명)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김제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 바. 활성화 사업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아.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불임자료

- 가. 조례제정안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관련 법령 발췌서
- 라. 전북특별자치도 유사조례 현황
- 마. 타 시·도 동일 조례 현황
- 바. 타 시·도 조례
- 사. 김제시 공공데이터 현황 자료
- 아. 입법예고 결과
- 자. 부서의견 조회 결과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과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김제시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과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활성화사업)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와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제공 사업

4.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관련내용

- 제11조(활성화사업)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와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제공 사업
4.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비용발생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정보정책팀장 안순임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 관련 법령 발췌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동일명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제정일
	여	부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5.10.10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타 시 · 도 동일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5.09.2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5.08.11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5.07.1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5.05.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5.03.19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5.03.10
경기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15.10.13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4.09.26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4.06.28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4.06.13

* 지자체는 성남시 천안시만 동일명 조례, 기타 유사조례명으로 총 96건 제정.

□ 타 시 · 도 조례 현황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5-10-10 조례 제 58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 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

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활성화 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계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 조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전북자치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총괄 검증·승인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및 소관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기별 현행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 협력)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민간기업과 전북자치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항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협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법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5. 10. 10. 조례 5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 시 · 도 조례 현황 ②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5.09.29 조례 제28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책임관은 시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
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5.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교육 · 훈련)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리 · 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기관 ·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김제시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 파일 데이터 56건, 표준 데이터셋 14건

등록유형	건수	데이터명
파일 데이터	56	야외운동기구현황,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등
표준 데이터셋	14	주차장정보, 박물관미술정보, 재활용센터 등

연번	구분	목록명	제공주기
1	파일 데이터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연간
2		체육시설업신고현황	연간
3		노인복지시설 현황	연간
4		약국정보	연간
5		병원현황	연간
6		모범음식점현황	연간
7		버스노선정보	연간
8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	연간
9		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	연간
10		특수의료	연간
11		팩스번호	연간
12		숙박업 현황	연간
13		돼지농장 가축분뇨 처리 현황	연간
14		경로당별 정수기 현황	연간
15		태양광발전소 매매거래 현황	연간
16		염소농장현황	연간
17		의류수거함 위치	연간
18		집단급식소 현황	연간
19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현황	연간
20		양만장 현황	연간
21		하천현황	연간
22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현황	연간
23		대기배출사업장 중질유 사용업체 현황	연간
24		도로 굴착 현황	연간
25		지방세 미환급 현황	연간
26		지방세 납세자 현황	연간
27		지방세 비과감면율 현황	연간
28		세원 유형별 과세현황	연간
29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간

연번	구분	목록명	제공주기
31	표준 데이터셋	지방세 납부 현황	연간
32		지방세 체납 현황	연간
33		지방세 징수현황	연간
34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연간
35		원룸 및 오피스텔 현황	연간
36		가금류 농장 현황	연간
37		태양광 현황	연간
38		요양원 명	연간
3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연간
40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병원명	연간
41		식품제조가공업현황	연간
42		문화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연간
43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정보	연간
44		야외운동기구현황	연간
45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연간
46		비료생산업 허가 현황	연간
47		제조업공장현황	연간
48		통신판매업체 현황	연간
49		1톤트럭폐차정보	수시
50		종교시설 현황	수시
51		건설철거업체현황	수시
52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수시
53		지방세 과세 현황	수시
54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현황	수시
55		계약정보	수시
56		의회 의안자료	수시
57		축산현황	수시
58		주차장정보	연간
59		렌터카업체정보	연간
60		가변전광표지판(안내전광판)	연간
61		종량제봉투가격	연간
62		재활용센터	연간
63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연간
64		길관광정보	연간
65		치매센터	연간

연번	구분	목록명	제공주기
69		보안등정보	연간
70		박물관미술관정보	연간
71		농기계임대정보	연간
72		금연구역	연간
73		육교정보	수시
74		자전거대여소	수시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